

의안번호	제 90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4월 11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908

제출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은 도민 문화수요 충족 및 충북 문화예술 주요 거점조성을 위해 당초 밀레니엄타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 내 '12,766㎡'를 확보하여 연면적 30,500㎡, 사업비는 2,200억원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 관람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 필요성에 따라 건축면적(30,500㎡→32,730㎡) 및 부지 면적(12,766㎡→19,766㎡)을 변경하고, 추진중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따라 사업내용을 현행화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변경)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

일반회계

- 용도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53-13번지
- 사업기간 : (당초) 2023. 8. ~ 2028. 2. (변경) 2024. 1. ~ 2030.12.
- 소요예산 : 155억원(부지매입비)
- 사업규모 : (당초) 12,766㎡ (변경) 19,766㎡
- 기준가격 : 조성원가 786,500원/㎡
- 계약방법 : 조성원가에 대한 수의계약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변경(안)》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4. 1. ~'30. 12
- 사업규모 : (당초) 부지 12,766㎡, 연면적 30,500㎡(지하2층, 지상4층)
(변경) 부지 19,766㎡, 연면적 32,730㎡(지하2층, 지상4층)
- 사 업 비 : (당초) 2,200억원 (변경) 2,145억원
- 사업내용 : (당초) 대공연장(1,500석), 소공연장(300석), 커뮤니티·다목적 공간
(변경) 콘서트홀(1,400), 중극장(680석), 스튜디오극장(300석),
전시실, 도립예술단 상주공간 등

3.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illegible]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필지	19,766	15,545,959				
	건물	1개동	32,730	214,5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 일원	19,766	15,545,959	2025	충북아트센터건립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3-13일원	32,730	214,500,000	2030	충북아트센터건립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이하여백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